

정보통신기술보고서

TTAR-0019

제정일 : 2004년 8월 10일

2.3GHz 휴대인터넷
IPR 연구보고서
(2.3GHz Portable Intern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por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서 문

1. 목적

본 기술보고서는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추진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2. 참조권고 및 표준

해당사항 없음.

3. 국제표준(권고)과의 비교

해당사항 없음.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6. IPR Adhoc 그룹의 임무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의 임무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및 수요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라이선싱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IPR Adhoc 그룹의 권한 범위는 특허권자의 로열티 세부사항을 규율하지 아니하고 라이선싱 방법을 직접 강요하지 아니하며 특허포럼(가칭)이 설립되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특허포럼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역할 면에서 볼 때 IPR Adhoc 그룹은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PG05, 표준화 과정 중 PG302로 개편)의 하부기관으로서 특허포럼과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며 표준화 그룹(PG302)도 특허포럼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7. 논의 범위

IPR Adhoc 그룹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는 3G3P, MPEG 등의 국제표준기술 특허 라이선싱에 관련된 단체들의 활동과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IEEE를 비롯한 표준단체들의 특허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적 표준이 되기 위하여서는 독점규제법의 적용 여부가 특허 라이선싱에서 필수적인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거의 모든 표준단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처럼 TTA에서도 인지특허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양식과 불제출시 제재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요한 특허 라이선싱 방법론에 대하여서는 검토는 하였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지침 내지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라이선싱의 핵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필수특허에 대한 평가 방법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역시 기본 권고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표준기술에는 포함되지만 적절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기를 거부하는 소위 홀드아웃 특허(Hold-out Patent)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였으나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제안기술이 복수로 제시되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라이선싱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특허포럼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으로 할 것인지 협의체로 할 것인지 등 설립 및 운영 방안과 특허포럼의 구성, 임무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진행방법

9월 1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0차례에 걸친 회의와 2번의 워크숍을 통하여 토론을 벌였고 의견이 충분히 개선되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TTA 규정에 의한 일반 회의원칙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사안을 확정하였다.

9. 이력

관수	제·개정일	비고
제1판	2004년 8월 10일	제정

목 차

1. 목적	1
2. 권한범위	1
3. 토의 내용	1
3.1 임무	1
3.2 외국사례	2
3.3 독점규제법	3
3.4 인지통보처리방안	4
3.5 라이선싱방법론	4
3.6 평가방법론	8
3.7 사후인지특허처리방안	9
3.8 기술표준채택평가방법	10
3.9 특허포럼 설립방안	10
4. 시행사항	10
4.1 인지통보처리방안	10
4.2 베이스라인 제출시 관련 특허 제출 요청	11
4.3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참여 동의 및 로열티 서약서 제출 요청	12
5. 권고사항	13
5.1 라이선싱방법론	13
5.2 평가방법론	14
5.3 사후인지특허처리방안	14
5.4 특허포럼 설립방안	15
6. 결론	17

1. 목적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라이선스와 라이선시, 표준제정자와 제조업체와 수요자 모두에게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라이선싱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권한범위

IPR Adhoc 그룹의 권한 범위는 표준화 과정에서 이슈로 대두되는 지적재산권 관련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며, 향후 기술표준과 관련한 특허포럼의 구성, 로열티율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등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제시한다.

IPR Adhoc 그룹은 표준화 그룹(PG302)의 산하위원회로서 특허포럼과 독립된 기관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3. 토의내용

3.1 임무

지금까지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IPR 관련 조직이 표준화를 위한 워킹그룹 내에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그만큼 IPR 취급 문제가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발 당시 아직 표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이며 본 Adhoc 그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처음부터 확정되었다기보다는 논의를 해가면서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적극적 라이선싱 방안을 제시하자는 의견부터 아예 IPR Adhoc 그룹을 존재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차후 특허권자들이 모여 논의하게 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라이선싱 및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를 정리하고 차후 특허포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워킹그룹 활동을 진행시켜 왔다. 3G3P(3rd Generation Patent Platform Partners)에서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3G3P 출범 전에 해왔던 사례가 있음도 참고가 되었다. 3G3P 단계를 3단계로 나누면 1988년 2월부터 1999년 6월을 1단계로 정의단계(Definition Phase)로 보고 1999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를 실행단계(Implementation Phase)로 보고 3단계는 2003년 1월 이후로 상업화단계(Commercialization Phase)로 나누어볼 수 있다. UMTS IPR WG에서 Platform Specification version 1을 제작하였고 이때 워킹그룹 활동을 하였다. 휴대인터넷 표준화의 IPR Adhoc 그룹의 활동도 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3G3P의 1단계 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G3P에서도 2단계에서는 Antitrust를 승인 받는 작업과 Platform Specification version 2를 제작하였고 관련 작업을 수행할 기관과 필요한 법적 주체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휴대인터넷의 지적재산권 워킹그룹 활동도 시기적절한 활동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워킹그룹이 해야 할 일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슈들 - 외국 사례, 독점규제법, 라이선싱 방식, 필수특허 평가방법, 표준기술 선정에서 특허권 반영문제, 특허포럼 등 - 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잠정 외국 특허권자에 대하여 차별을 두거나 특허 문제로 인하여 표준화 과정에의 참여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절차상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IPR Adhoc 그룹의 임무는 상기 목적과 권한 범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큰 시각에서 수요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직접 참여주체인 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조업체 및 특허권자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특허포럼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3.2 외국사례

각종 표준제정 단체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MPEG과 3G3P 활동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하여 폭넓게 연구하여 상기 제도들로부터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휴대인터넷 표준화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3.2.1 표준단체의 지적재산권 정책

표준단체는 국제표준단체, 지역표준단체, 국가표준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제표준단체로는 국제적인 ITU, 지역표준단체로는 유럽의 ETSI 국내표준단체로는 한국의 TTA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표준단체들은 나름대로 특허정책(Patent Policy)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표준반영에 관한 견해이다. 특허를 표준에 포함시키자는 긍정설적 입장을 취하는 단체가 대부분인 반면, 드물게는 특허가 개재된 기술을 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즉 부정설적 입장을 취하며 오히려 반영하더라도 로열티 프리(Royalty Free) 정책을 취하는 표준화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W3C 표준단체이다. 긍정설은 특허를 표준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표준기술이 좋은 기술을 탄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허를 표준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정설 입장은 특허가 기술발전의 촉진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실행에 옮길 때 고액의 로열티로 말미암아 기술발전의 장애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로열티정책으로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혹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 로열티 또는 적절한 로열티로

번역되는 "Reasonable"이란 뜻은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통일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여하튼 대부분의 표준단체는 특허로열티 입장으로서 합리적 로열티를 적용하고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비차별적이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겠다는 뜻으로 국가, 인종, 업체규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Fair"라는 공평이란 개념을 추가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채택한 단체가 있고 아직 채택하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Pro-patent 정책을 구상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Fair"라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Pro-patent 정책 자체가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라이선시에게 특허권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로열티를 얻어내게 하기 때문이다.

3.2.2 3G3P

3G3P는 IMT-2000 CDMA 이동통신표준안과 관련하여 특허에 관한 라이선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 단체이다. 이 단체는 실제 RF Interface와 관련된 5개 표준을 모두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WCDMA와 CDMA2000이 주요 대상이다. 이 단체는 처음 발족시에 비하여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축의 주된 이유는 CDMA2000 계열의 퀄컴, WCDMA 계열의 노키아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자신들의 특허를 표준 내에서가 아닌 독자적인 라이선싱으로 처리하여 고액의 로열티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메이저 업체가 빠졌다는 것은 특허 라이선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이 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실시되지 않으면 기술 상용화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들을 이 단체의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 표준화 및 라이선싱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3.2.3 MPEG IF

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은 동영상 기술 관련 표준단체로 MPEG1, 2, 4, 7, 21까지 표준을 제정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MPEG 2는 디지털 TV 방송 표준기술로 MPEG LA를 통하여 현재 라이선싱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이를 이어 받아 MPEG 4 IF (Industry Forum)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각 특허권자들을 두어 라이선싱을 하도록 하였다. 평가기관을 두고 원스탑 쇼핑(One-stop Shopping) 체제를 만들어 라이선싱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고무되어 MPEG 7, 21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이를 주문하자 MPEG 4 IF를 MPEG IF로 바꾸었다. 그리고 마케팅 그룹과 상호성(Interoperability) 그룹을 통하여 제품을 테스트하고 로고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 단체가 시사하는 바는 원스탑 라이선싱 방법을 취한다는 점과 주요 라이선서들이 두루 참여하여 국제표준화로 들어섰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3.3 독점규제법

국제 표준기술 특허 라이선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법률적 테마가 독점규제법

이다. 만일 국내에서의 표준에 그친다면 굳이 독점규제법에 관한 테마를 다루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표준을 국제표준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점규제와 특허와의 관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이 동시에 연관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Antitrust Law와 IPR이 관련된 판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셔먼법(Sherman Act)이 출발한 이래로 여러 번의 법개정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특허법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특허법 제도가 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특허법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한 곳으로 집합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침해소송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MPEG 2 특허법 이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지켜야 독점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른바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기 위하여 1995년 4월 IP Guideline을 발표하였다. 아직은 이에 대한 개정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PEG이나 3G3P는 유럽과 미국법무부(DoJ)에 반독점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공문으로 보내 승인을 얻어내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3.4 인지통보 처리방안

인지통보라 함은 표준 또는 표준안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인지하고 있음을 TTA에 통보하는 절차이다. 이는 표준(안)과 관련이 있는 특허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파악하여 표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지 통보된 특허에 대해 특허권을 받아두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서는 표준에 반영될 특허를 무료 또는 RAND 조건으로 라이선싱할 것이라는 일종의 서약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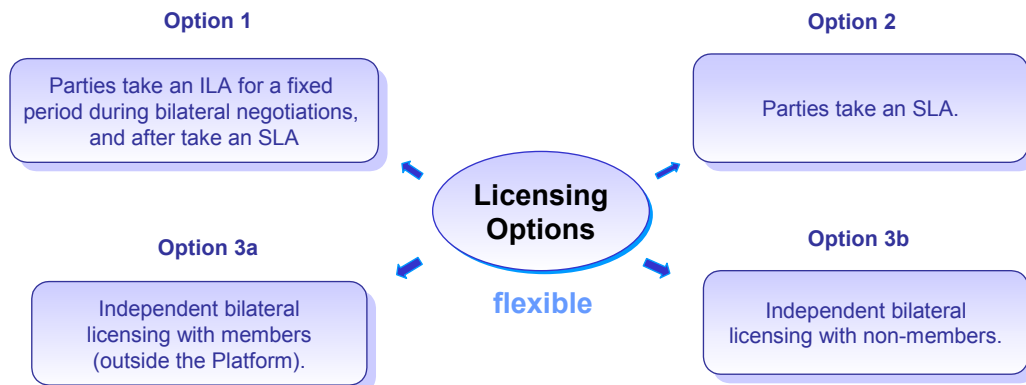
이와 관련되어 IPR Adhoc 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표준화 그룹에서 특허 검색(Patent Search)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IPR Adhoc 그룹은 이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유로는, 검색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검색을 행할 주체가 없으며, 표준화 단체에서 이를 행하는 선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표준화 그룹에서 특허 검토(Patent Review)를 수행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의 문제는 만일 특허와 무관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특허를 제출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관련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 역시 표준화 그룹에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는 특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회원사가 파악한 특허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 자기 전략을 노출시키겠냐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실제 제출을 종용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제출한 회원사는 없었다.

3.5 라이선싱 방법론

실제로 라이선싱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두 가지 형태의 특허라이선싱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5.1 3G3P 특허플랫폼

3G3P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라이선싱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현재 3G 특허플랫폼에서 검토하고 있는 라이선싱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4가지이다. 첫째는 ILA(Interim License Agreement: 라이선스 가협정) 방식인데, 라이선스 가협정이란 함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의 임시 협약으로서, 협상 기간에 필수 특허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가 SLA(Standard Licensing Agreement: 표준 라이선싱 계약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가 특허플랫폼에 가입하여 그곳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방식은 플랫폼 이외에서 멤버들 간에 독립적인 계약체결을 하는 방식이고(3a) 네 번째는 특허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과 라이선싱하는 방법이다(3b). 이와 같이 다양한 라이선싱 방법을 허용한 것은 GSM 기술을 실시하던 중 라이선싱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다양한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3G3P라이선싱방법

3G 특허플랫폼 라이선싱 방안은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특허플랫폼의 규약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고 원스탑 쇼핑이 될 수 없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3G3P에서 시행하는 라이선싱 방안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MCR 제도이다. 로열티 책정으로 인해 관련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G 특허플랫폼의 라이선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로열티율(Royalty Rate)을 이해해야 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SRR(Standard Royalty Rate)¹⁾는 표준 로열티율로 특허 1건이 가지는 로열티율이며 고정된 값으로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0.1%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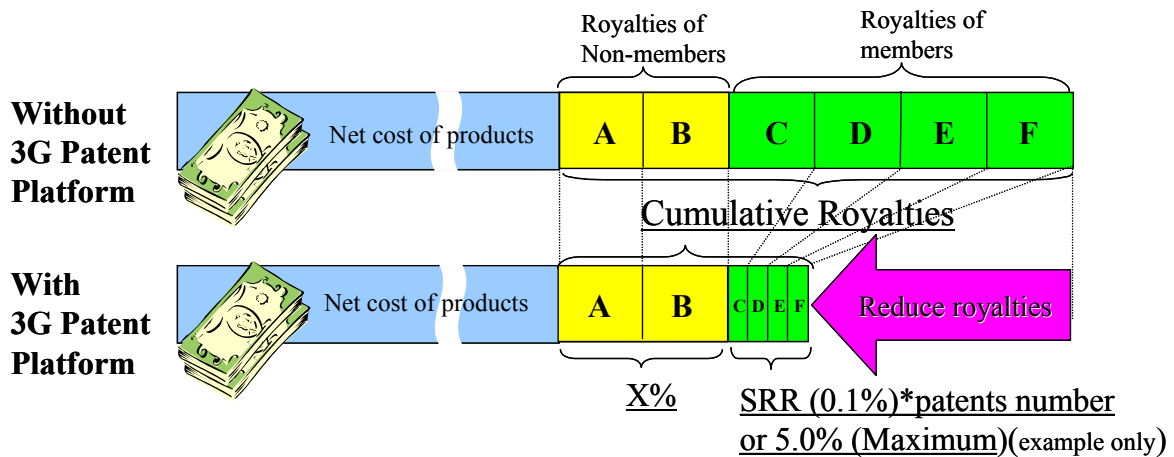
필수특허가 많아지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CRR²⁾(Cumulative Royalty Rate)는 누적 로열티율을 말하며 누적 로열티 비율(CRR)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CRR = N \times SRR$$

그런데 여기에서 CRR이 MCR(Maximum Cumulative Royalty)³⁾을 초과하게 되면 라이선서에게 허가된 최대 라이선스 숫자(이전 기수)로 MCR을 나누어서 계산된다.

$$SRR_{N+1} = \frac{MCR}{\max_k(\text{Number of Licenses})}$$

여기서 일단 MCR을 5%라고 하면 50개 이상의 특허가 존재하게 되면 특허권의 숫자로 나누어 SRR이 조정되게 하여 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림 2) 3G 플랫폼의 SRR과 MCR관계

3.5.2 MPEG 특허풀

MPEG LA는 MPEG 2 특허권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MPEG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로열티를 징수하기 전 한 일은 접수한 특허가 필수특허인지를 평가하는 일이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특허 라이선싱 협의를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핵심기술이라고 인정이 되면 특허가치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표준에 포함된 특허 중에는 분명히 경중이 있기 마련이지만 핵심기술이라고 일단 판정이 되면 특허 가치의 경중에 차별을

- 1) Standard Royalty Rate(표준 로열티 비율) 표준 로열티 비율(SRR)은 표준 라이선스 협약 또는 라이선스 가협정에 의해 개별 라이선스별로 적용되고, 라이선싱 관리자가 인증된 특허에 대해 할당하는, 특정 제품 카테고리의 현재 로열티 비율 값이다.
- 2) Cumulative Royalty Rate(누적 로열티 비율) 누적 로열티 비율이라 함은 특정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불하게 되는 실제 총 로열티 비율로서, 각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 표준 라이선스 협정 하의 모든 라이선스에 기초해 지불하게 됨.
- 3) Maximum Cumulative Royalty Rate(최대 누적 로열티 비율) 최대 누적 로열티 비율(MCR)은 각각의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서, 누적 로열티 비율 이하에서 정해진다.

두지 않았다. 이 점은 개별 특허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면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라이선싱과 산업화를 빠르고 손쉽게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는 장점이 된다. 이에 따라 MPEG LA는 특허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시권자들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특허 라이선싱의 원스탑 쇼핑을 제도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품개발자가 특허권자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MPEG LA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필수특허 라이선싱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특허권자도 침해한 업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MPEG LA에 위탁함으로써 특허 라이선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N²의 계약행위를 2N 번의 계약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비용 면에서 효율 면에서 매우 뛰어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MPEG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산 방법의 기본원칙은 “제품당 로열티 * 수량”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별로 최대치를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로열티가 곧바로 특허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MPEG LA에서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제하고 특허 건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특허는 숙지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얻은 총 수익금을 해당 특허수로 나누어 특허당 로열티를 지급한다. 만일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핵심특허라고 판정을 받은 개수가 미국 A사가 5건, 독일 G사가 2건, 영국 B사가 3건이라 하자. 이때 로열티로 인해 받은 수익이 1020억원이고, MPEG에서 대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20억원이라 할 때 미국 A사가 받는 금액은 [1020억-20억] * 5/(5+3+2) = 500억이 된다. 이처럼 상기에서 설명한 MPEG 특허료 산정 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아닌 특허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에 의한 새로운 특허가치를 탄생시킨 사례이다. 이를 일반화하여 1개의 특허가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특정국가에 등록된 필수 특허갯수: Number of necessary Patent

특정항목: EA(Each)

특정항목 단위당 특허실시권 사용비용: Fee per Unit

사용료를 거두어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 Fee for Gathering

특정국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금액(1개 필수특허 로열티) = R_{value}

$$R_{value} = \frac{\sum_{ea=1}^{ea=n} N_{ea} * Fee \ per \ Unit - Fee \ for \ gathering}{Number \ of \ necessary \ pa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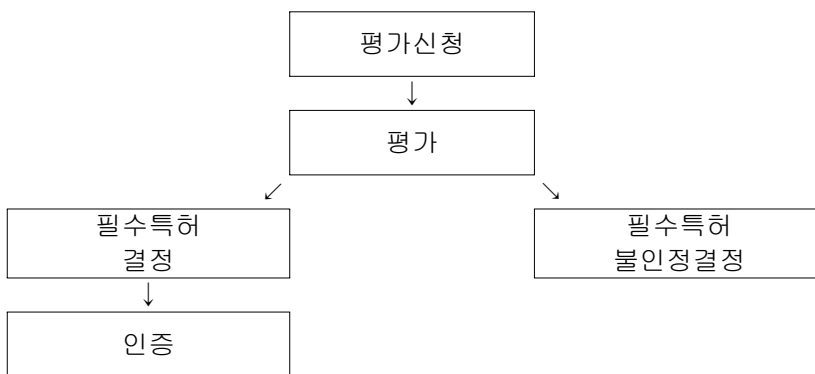
3.6 평가방법론

평가방법은 특허포럼(가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그간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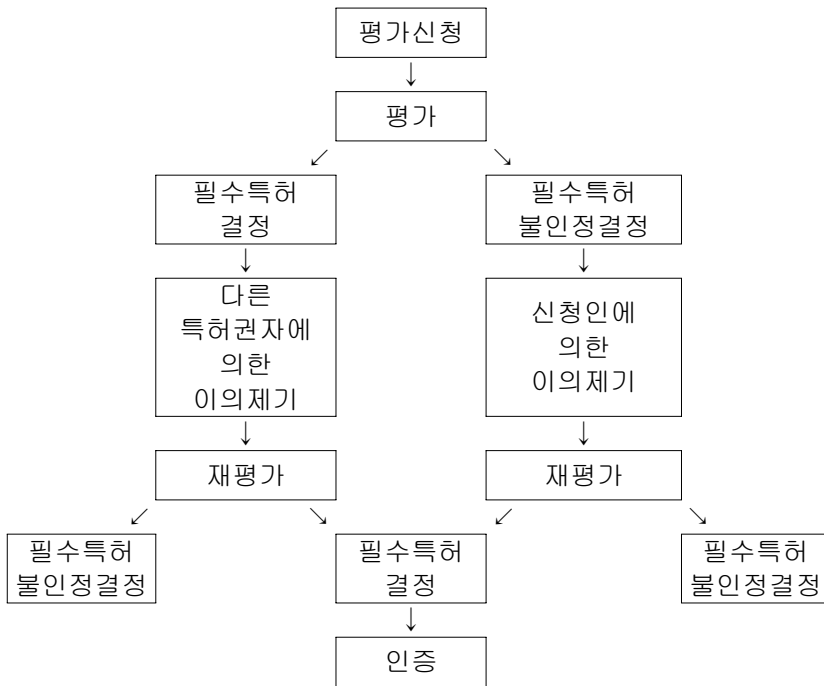
필수특허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기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평가대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상 그리고 아직은 국내표준이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가 무효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평가절차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이의신청 제도는 부적절한 특허가 포함되어 타인의 정당한 로열티를 가로채는 불합리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면에서 복잡하며 또 회원 간에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은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자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정 비율 이상 찬성시 공동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평가비용에 있어서 국제 특허평가 비용이 거의 건당 천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인증 비용도 따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등록특허의 경우 평가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가기관의 선정 및 독립성 보장 방안도 검토 대상인데 이는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와 독립성 보장도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다.

가. 단심



나. 복심



(그림3) 특허평가 절차도

3.7 사후인지특허 처리방안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발견된 표준 관련 특허를 사후인지 특허라고 한다. 사전에 발견되었으면 표준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표준화가 완성된 후에 발견되어 사후 대책만을 세워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특허가 다른 특허와 같이 정상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면 문제가 적는데 이보다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사업화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문제는 심각하게 발전된다. 이를 흔히 “Hold-out Patent” 라고 하고 속어로 ”알박이 특허“라고 한다. 알박이 특허란 아파트 개발시에 한 가운데 자리잡은 조그만 땅으로 고액의 땅값을 요구하는 경우를 차용한 용어이다. 이런 특허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가 법률적 대처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대처 방안이다. 법률적 대처방안으로는, 특허법상의 통상 실시권 허여심판과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강제실시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가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극히 예외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강제실시권 제도의 법률 요건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그나마 법률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IEEE에는 특허위원회(Patent Committee)가 존재하여 만약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위원회가 중재 내지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8 표준기술 채택평가 방법

표준화 과정에서 첫 번째 결정 사항인 TDD와 FDD 방식의 경합을 거친 후 두 번째에 주파수 대역폭에 대하여 경합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후보에 대하여 최종 선정을 하고자 하였을 때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평가가 15% 할당되었다. 할당된 15%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IPR Adhoc 그룹의 소관이었다. 이를 통해 평가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권리 남용을 막고 원활한 라이선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지혜를 모았다. 로열티를 제안할 때에 라이선싱 형태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열티율을 정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으며 특허포럼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 논의 과정에서 3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허 로열티를 합리적인 선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MCR 정책이다. 둘째 특허포럼에의 가입을 유도하여 주요 특허권자들의 남용을 억제하는 조건을 기술표준 채택에 넣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포럼 유도정책이다. 셋째가 기술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베이스라인 기술 관련 특허수에 비례하여 배점을 하는 방법이었다. 보유 특허수를 전체 특허수로 나누어 이에 비례하여 점수를 선형적으로 할당하였다.

3.9 특허포럼(가칭) 설립방안

휴대인터넷 특허포럼의 설립 이유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특허의 라이선싱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설립하는 데는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비영리 법인화시키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비용 처리에 보다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 협의체로 하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여 보다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시행 사항

4.1 인지통보 처리방안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를 인지통보 받기위해 두 차례에 걸쳐(2003년 11월 및 2004년 5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의 공문을 TTA 사무총장 명의로 각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TTA의 전 회원사에게 첫 번째 공문을 발송한 주요 이유는 표준화의 초기 단계에서 휴대인터넷 표준(안)과 관련이 있을 만한 특허를 파악하여 예상 라이선서를 추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회원사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 이외의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어레이 컴 등은 기술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 인지통보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는 등 표준기술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출 실적은 없었다. 두 번째 공문은 표준(안)의 윤곽이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 TTA의 전 회원사, 휴대인터넷 표준화 그룹의 현재 또는 과거의 위원사 및 옵저버 모두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향후 표준이 완성된 이후에 사후 인지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 참여를 배제 당했거나 몰라서 제출을 안 했다고 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거부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크다.

3. 위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2.3GHz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화과제의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 중인 바, 해당 과제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확인 및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귀사에서 해당 표준화 과제에 관련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 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취급요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가. 표준화 과제명 : 2.3GHz대역 휴대인터넷 표준
- 나. 제출 요청 내역 : 2.3GHz 휴대인터넷 관련 TTA 사업 참가자가 인지한 특허 목록
- 다. 제출 양식 : 불임의 별지 제1호 서식(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인지통보서)
- 라. 인지통보서 제출기한 : 2003년 12월 15일(월)

불임 : 정보통신 표준화관련 지적재산권 취급 요령 1부. 끝.

2.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안)이 도출되어, 본 표준(안)이 TTA의 회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참조하시어 TTA의 회원사 등을 수신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취급요령에 기초한 IPR 인지통보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발송대상 : TTA 회원사, 현재 또는 과거의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관련 참여사 기타 본 표준화 관련 회사
- 인지통보서 제출 요청 문서 발송 시기 : 2004년 5월 22일 이전
- 문서 내용 중 인지통보서 제출요구 권장 기한 : 2004년 6월(표준안 공고 전까지)

4.2 베이스라인 제출시 관련 특허 제출 요청

자사의 기술을 표준으로 제안하는 소위 베이스라인 제출자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토록 권유하였다.

1. 무선접속 실무반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접수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고하여, 베이스라인을 제안하는 자가 베이스라인과 관련된 IPR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 : 베이스라인의 제안자

나. 제출시기 : 베이스라인 제출과 동시

(단, 제출 이후 출원된 IPR은 추후 제출 가능)

다. 제출 형식 :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요령의 “표준관련 지적재산권 인지 통보서”에 준하되, 관련 IPR이 다수인 경우 별첨 리스트도 가능

라. 제출 IPR의 범위 : 베이스라인 기술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 (국내 및 해외 포함, 출원·공개·등록 및 입수 가능한 경우 비공개까지 포함)

2. 아울러, 본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취급에 중요성에 비추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TTA 규정에 의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베이스라인 관련 IPR의 제출을 성실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베이스라인의 평가에 있어서 관련 IPR의 제출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제출사는 사후 일어날 특허 라이선싱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안 기술평가시 IPR이 15%의 비중으로 반영되고 그 일부는 보유 IPR의 수에 비례하여 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확정되자 삼성전자와 ETRI는 200건이 넘는 특허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다.

4.3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참여 동의 및 로열티 서약서 제출 요청

IPR Adhoc 그룹은 표준기술 채택 과정에서 공문 “특허포럼참여동의 및 로열티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요구하였다. 표준후보 기술(베이스라인) 평가시에 본 문서와 특허리스트 제출 요구 문서를 같이 발송했다. 이 요구에 따라 베이스라인 제안사인 삼성전자/ETRI 및 포스데이타는 동의 및 서약에 모두 동의하는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3가지 기능을 만들어 내었다. 첫째 표준기술이 되기 위한 특허평가의 객관성인데 특허를 개수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평가한 것은 표준기술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로열티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자는 내용이다. 문서에서 보듯이 표준기술로 채택 받으려면 MCR 3%를 초과하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다만 권고이기는 하지만 고액의 특허 로열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는 특허포럼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허포럼에 메이저 특허권자를 가입시켜 3G3P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참여 동의 및 로열티 서약서

TTA의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와 관련된 2.3 GHz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과 동 관련 국제 표준의 선도를 위한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귀사의 의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특허포럼 참여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아래 참조)은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특허권의 사용허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할 예정인바, 본 제안자는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 제정 이후 휴대인터넷 특허포럼에 참여할 것이며 이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참고: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 개요>

- o 참가대상 : 필수 특허 소유자 및 관련 사업자
- o 기본업무 : 라이선싱을 관장할 법인 설립 및 라이선싱 절차 수행
- o 설립목적 : 2.3 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의 특허 정책 및 참가대상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 관련 라이선싱 업무의 처리를 원활히 함.
- o 활동시기 : 표준초안 ver 1.0 완성 이후
- o 성격 : TTA 와는 정책 및 업무상 독립적인 한편, 2.3 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과는 협력 관계
- o 운영방법 : 참가대상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

2. 로열티 서약

본 제안자는 2.3 GHz 휴대인터넷 표준과 관련된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특허권자로서 2.3GHz 휴대인터넷 표준기술 관련 로열티에 관하여 결정될 라이선싱 방식에 무관하게 총로열티(MCR)를 매출액 대비 3% 이하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설립될 휴대인터넷 특허포럼(가칭)에서 이 이상의 로열티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예 (), 아니오()

5. 권고사항

5.1 라이선싱 방법론

라이선싱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3G3P의 플랫폼 방식과 MPEG 폴 방식이 비교 대상이 된다. MPEG 폴은 원스탑 쇼핑이 가장 큰 장점인 데 비하여 3G3P 플랫폼 방식에 비하면 계

약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개의 방안에서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결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두 가지 방법에서 성격 상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결합이 가능한 것이라면 결합하여 더 좋은 라이선싱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라이선싱, 즉 제조업체나 사용업체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로열티를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일단 로열티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MCR 제도를 두어 지불할 로열티 총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거나 로열티를 일정 한도로 묶어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어떤 라이선싱 방식을 취하던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로열티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3G3P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2 평가방법론

표준에 포함된 필수특허 또는 기본특허의 평가방법에는 크게 복심제도와 단심제도가 있다. 단심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단심제도는 특허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만일 평가자와 특허권자가 담합하면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면에 있어서는 저렴하다. 반면 복심제도는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단심제도보다 우수하지만 비용과 시간은 더 소요될 것이다.

복심제도를 채택한다 하여도 모든 절차가 복심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복심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느 한 방법이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보기보다는 비용과 공정성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복심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의신청제도의 폐단이다. 즉 특허권자들 간의 다툼은 협상의 와해를 초래하기 쉽다. 다시 말해 만일 이의신청으로 한 특허권자가 평가대상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이의제기를 받은 특허권자가 반발하여 특허권자들 간에 균열이 생겨 라이선싱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복심제는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제도로는 단심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5.3 사후인지특허 처리 방안

홀드아웃 특허라고 불리는 소위 알박이 특허로 생기는 문제는 실시권자 측면에서 보면 특허제도가 원망스러운 정도이고 특허권자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좋은 제도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이해관계의 상충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하다. 법률적 강제조항은 보조적으로 하고 협상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권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선싱 후보를 특허포럼 안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제일 급선무이다. 특허포럼 밖에서 실시권 허여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넘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면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선으로서 법률적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특허법의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재정통상실시권을 사용

해야 하며 부정경쟁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역시 차선적인 해결책일 뿐임을 인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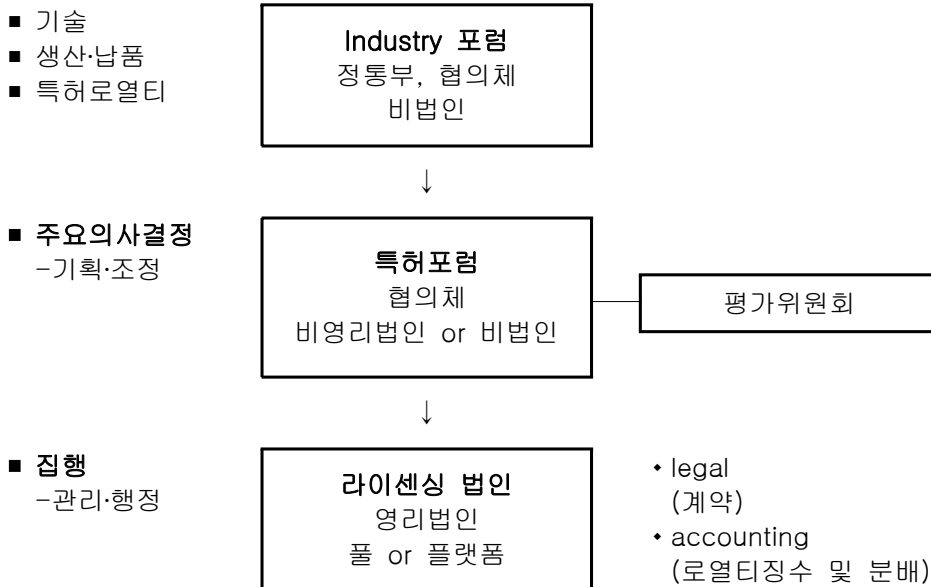
5.4 특허포럼 설립방안

특허포럼(가칭)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수차례의 회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 IPR Adhoc 그룹에서 권고하는 포럼 설립 방안은 말 그대로 권고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고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이 권고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되지만, 실제 특허포럼의 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고 특허포럼의 성공은 휴대인터넷 표준과 사업의 성공과 직결될 것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5.4.1 설립목적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안)과 관련하여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등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기하고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적인 시장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련 국제표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5.4.2 기본 구상



5.4.3 주요임무

가. 특허포럼의 임무

- 필수특허(이하 요소기술특허 포함)를 정의하고 필수특허 여부를 판단
-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싱의 조정
- 로열티 비율을 균등하게 할지 가중치를 줄지 등의 검토
- 특허풀링시스템의 형태의 타당성 검토 및 결정
- 표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방침 설정 및 구체 운영방안 수립
- 특허포럼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
- 라이선싱 법인의 성격, 활동방향, 로열티 방침 등을 설정
- 특허평가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나. 라이선싱 법인의 임무

- 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싱의 전반적인 관리
- 특허에 관련한 계약체결 등 법적문제 처리
- 라이선싱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 회계문제 처리

다. 특허평가위원회의 임무

-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필수특허여부를 판단

5.4.4 성격

- 협의체 형태를 권장함. 그 이유로는 라이선싱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협의·조정 조직이며,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독점규제법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비영리 성격을 권장함. 단, 비용의 징수 및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라이선싱 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4.5 운영방안

가. 참여자

- 정회원은 특허권자, 실시권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업자
- 준회원으로서 학계, 연구소 기타 전문가 참여 가능
- 특허포럼 참여자, 라이선싱 법인 참여자를 구분

나. 활동시기

- 표준(안) 버전 1.0 이후

다. 비용

- 정회원만 분담하거나 정회원 및 준회원이 공동분담

라. 조직구성

- 현 단계의 포럼의 의미는 한시적 조직의 의미가 아니라 라이선싱까지도 관장하는 것이며, 협의체적 성격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임
- 사무국(특허포럼을 이끌 주관 그룹)과 같은 조직이 필요함
- 포럼의 성격상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국 내에 이를 전담할 플랫폼 전담요원이 필요함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 표준기술 관련 특허를 라이선싱하기 위해서는 첫째 독점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실시권자에게나 특허권자에게 이득을 주고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라이선싱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라이선싱 모델에 있어서는 3G 특허플랫폼과 MPEG 특허플랫폼에서 장점을 따서 한국형 내지는 휴대인터넷 표준화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IPR Adhoc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플랫폼 형태를 권장하는 한편 MCR을 채택하여 총 로열티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휴대인터넷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소위 사후 인지 특허로 인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인지통보서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로열티 서약서를 접수하였으며, 소위 홀드아웃 특허는 가능한 한 예상 특허권자를 특허 풀링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안이 현명하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서와 라이선시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허포럼을 발족시켜 특허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방하고 논의하게 하여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휴대인터넷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IPR 문제를 취급하도록 권장한다.

표준작성 공헌자

표준 번호 : TTAR-0019

이 표준의 제·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셨습니다.

구분	성명	위원회 및 직위	연락처	소속사
과제 제안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 초안 제출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 초안 작성 및 검토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안 편집 및 감수	2.3GHz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PG302)			
표준안 심의	김영균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의장	031-279-5100	삼성전자
	류충상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710-6460	전파연구소
	이한명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3470-4584	유니모테크놀로지
	정한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부의장	02-526-6460	KT
	최진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31-450-7100	LG전자
	홍대형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05-8470	서강대학교
	정찬형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317-6170	전파진흥협회
	최혜옥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66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목하균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81-5931	KBS
	이상운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89-3685	MBC
	손 원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31-201-2983	경희대학교
	박유식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2-710-6510	전파연구소
	안재영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38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채종석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042-860-66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대성	전파방송 기술위원회 위원		서화정보통신
사무국 담당	진병문	본부장	031-724-0100	TTA
	김대중	팀장	031-724-0090	TTA
	이한수	팀장	031-724-0110	TTA
	유성필	차장	031-724-0113	TTA
	최형진	과장	031-724-0093	TTA
	류금자	대리	031-724-0094	TTA